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(생략) 1~20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① (생략) 1~20 (현행과 같음) <u>21. “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”이란 반도체·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일정한 압력과 유량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(Cabinet)를 말한다.</u></p>
<p>제18조(안전장치 현황) ①~④ (생략) ⑤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<u>공정이나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비상배출탱크, 플레어스택, 흡착탑 및 스크러버 등의 목록과 각 시설이 정상 및 비정상상태에서 배출물질을 처리하는데 충분한 용량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.</u> <u><신설></u></p>	<p>제18조(안전장치 현황) 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<u>다음 각 호를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.</u> <u>1. 처리시설(스크러버 등) 목록</u> <u>2. 처리성능(처리제, 처리방식, 처리효율 등) 및 처리용량</u> <u>3. 기타 처리성능에 필요한 사항</u></p>
<p>⑥ 제1항부터 <u>제5항</u>까지 작성 항목은 사업장의 현황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만 작성할 수 있다.</p>	<p>⑥ <u>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의 배출시설 현황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포하는 가스공급설비 배출 위험성 평가 틀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5조(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) ①~③ (생략)</p>	<p>제25조(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) ①~③(현행과 같음)</p>

<p>④ (생략) 1~5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 1~5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6.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</u></p>
<p><u>6. 기타시설</u></p>	<p><u>7. -----</u>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부칙 <제2025-00호, 2025.00.00.>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안전원장에게 제18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.</u></p>